古文獻 政書類에 대한 分析硏究

An Analytical Study of Joungseo-Ryu in the Classification of Rare Old Books

현 영 아 (Hyun, Young-Ah)*

◁ 목 차 ▷

1. 序 言
2. 古文獻 目錄의 發達
3. 政書類의 細分 類目
4. 政書類의 類目 分析
5. 結 言
<참고문헌>

<초 록>

東洋 思想을 바탕으로 한 古文獻에 대한 정보봉사에 있어 이를 전공한 司書 외에 일반 사서들에게는 다소 생소함은 물론 특히 專門 사서들의 고문헌에 대한 主題 檢索 및 分類 등에 있어 부담스러움이 있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더 나아가 東洋學 및 韓國學 연구자들의 古文獻 이용의 원활함과 기본적인 이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이들 주제들에 대하여 연구 한 것이다. 많은 문헌들을 담은 고문헌 목록에 세부 類目들이 많으나 그 중 政書類의 주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이들 각 주제에 대한 내용들의 현대적 해석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고문헌의 歷代 目錄에서의 政書類의 발달 과정과 변화한 類目들을 살피고 각 細分 주제에 대하여 그 由來와 內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 分析하므로서 전문사서들의 고문헌에 대한 주제별 정보봉사 및 분류 뿐 아니라 전공자들의 활발한 이용을 돕고자 한다.

要語: 고문헌분류, 사부분류법, 정서류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ahyun@mju.ac.kr)
접수일: 2008년 12월 8일 최초심사일: 2008년 12월 11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19일

www.kci.go.kr

<ABSTRACT>

Information services for rare old books based on oriental thoughts are rather unfamiliar to general librarians who did not specialize in this field, and even to those librarians specializing in rare olde books, subject searches and classification are somewhat a burden. In this research, investigated are the issues in order to help lessen the burden of librarians and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use of old documents by researchers in the fields of Oriental Studies and Koreanology. Since the themes of Joungseo-Ryu are very complicated among all those subject divisions in the catalogues of old documents, it seems important to understand its contents from the modern viewpoint.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help librarians perform better subject searches and classification as well as researchers use more actively old documents by reviewing the development and changes in the subject subdivisions of Joungseo-Ryu and analyzing the origins and contents of various topics in this subject.

Key words: Rare Old Books'Classification,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Scheme JoungSurRyu

www.kci.go.kr

1. 序 言

現代 圖書館에 있어서 古文獻 및 이와 관련된 傳統 자료에 대한 情報奉仕 및 그 조직은 이들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主題 분석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문헌에 대한 정보봉사 및 현대의 정보조직에 있어 새로운 저작물에 대한 분류체제가 끊임없이 개정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주제에서의 고문헌 자료에 대한 주제 분석은 현대적 주제와의 접목이 불가피하다.

이들 고문헌 및 관련 자료는 새로운 정보화 시대의 정보처럼 급속히 생산 발전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문헌들을 토대로 현대적 觀點과 분석 및 現代的 時點에서의 文字的 歷史的 思想的 接近을 통해 발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旣存의 고문헌 자료들의 주제는 동양의 사상적 학문적 배경을 基本으로 한 것이므로 東洋學 및 그 관계 분야를 연구하는 이들 뿐 아니라 韓國學 연구자들의 폭 넓은 利用 擴大는 물론 전문 사서들의 질 높은 문헌 奉仕를 위하여서도 이들 자료에 대한 主題別 接近과 같은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문헌 주제 배경을 토대로 이들의 分類 방법이었던 四部分類法의 經, 史, 子, 集部 중의 많은 분류 항목들 가운데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史部 政書類의 類目들을 중심으로 역대 목록에서의 관련 유목을 살피고, 각기 관련 주제의 認識을 위하여 類目들의 變遷 사항과 세부 내용들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돕고자 세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써 전문 사서들로 하여금 동양학 및 한국학 관계에 있어 시대성을 초월한 깊이 있는 정보봉사 및 조직을 꾀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 분야의 활발한 연구에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古文獻 目錄의 發達

古文獻이라 함은 물론 새삼스럽지만 中國과 韓國과 日本이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밝혀야 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한국에서는 隆熙 3(1909)년 以前,

www.kci.go.kr

중국에서는 淸末 1911년 以前, 일본에서는 明治 以前 1857년이나 明治 末期 1911년 以前의 도서를 뜻한다. 내용적으로는 동양의 學術과 思想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외형적으로는 형태상 東洋 裝幀 및 形式의 古印刷 및 筆寫 기법으로 이루어졌으며 材質은 古紙로 된 典籍으로 규정짓고 있다.[2)]

고문헌에 대한 분류는 중국의 前漢末 劉歆의 「七略」에서 비롯되어 그 體制는 輯略, 六藝略, 諸子略, 詩賦略, 兵書略, 數術略, 方技略이었으나 「漢書」 藝文志에서 「七略」의 體制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 후 蔡倫의 製紙法이 보급되면서 서적의 편찬이 많아지자 魏晋시대의 國家藏書目錄인 「魏中經簿」, 「晋中經新簿」, 「晋元帝四部目錄」등을 비롯하여 全國圖書總目인 「七志」과 「七錄」이 편찬되는 등 이 시기에 많은 目錄들이 편찬되면서 분류체계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 즉 「中經簿」과 晉 荀勗의 「中經新簿」은 「七略」과는 다르게 四部체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으니 甲・乙・丙・丁 四部로 대체하면서 「七略」의 兵書, 術數, 方技를 諸子로 하여 乙部에 분류하고, 丙部를 신설하여 史書와 類書를 합하였다. 荀勗이 兵書, 術數, 方技를 乙部로 하고 丙部에 史書를 분류한 주요 원인은 당시 藏書의 類別上에 큰 변화를 의미한다. 史書의 양적인 증가와 兵書, 術數, 方技 三類의 散失로 서적이 많지 않은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部類를 조정 정리한 셈이다.[3)] 그 후 「晋元帝四部書目」에서 甲・乙・丙・丁部의 명칭은 같으나 앞서 荀勗의 「中經新簿」과는 같지 않으니 乙部를 史記로, 丙部를 諸子로 하여 四分法의 차례가 여기서 비로서 확립되었다. 이후 隋書經籍志[4)]에서 四部 즉 經・史・子・集部의 명칭이 설정되고 四部 40類와 道經과 佛經을 부록으로 하여 모두 55類로 구성되는 등 四分法이 확립되었다. 舊唐書經籍志[5)]는 隋書의 예를 따라 四分法을 채택하면서 四部 45類로 세분되었다. 그 후 「崇文總目」, 「新唐書藝文志」및 개인서목의 「郡齋讀書志」, 「遂初堂書目」, 「直齋書錄解題」 등에서 四分法을 그대로 존숭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0), 5.
3) 呂紹虞, 「中國目錄學史稿」 (台北: 丹靑圖書有限公司, 1986), 53-59.
4) 이하 隋志라 한다.
5) 이하 舊唐志라 한다.

www.kci.go.kr

이 시기에 私家書目에서는 四分法을 택하지 않은 目錄도 편찬되었으니, 宋 鄭樵 撰의 「通志藝文略」을 들 수 있으며, 이는 12分類 총 284目으로 類目들을 특별히 세분 展開시켰다.

元·明代에 있어서 우선 官修書目을 보면 「宋史」 藝文志는 四分法을 채택하고 있으나 明代의 「文淵閣書目」에서는 旣存의 歷代 四部目錄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의 私家目錄에서 보면 四分法을 尊崇한 目錄과 이를 따르지 않는 目錄들이 있으니 前者의 例로서 元 馬端臨의 「文獻通考」 經籍考가 편찬되어 4部 56類로 세분되었음을 들 수 있고, 이외에도 「百川書志」, 「萬卷堂書目」, 「紅雨樓家藏書目」 및 「國史經籍志」, 「通志藝文略」을 비롯하여 「淡生堂藏書目錄」, 「千頃堂書目」등을 들 수 있다. 한편, 後者 즉 四分法을 따르지 않은 目錄으로서는 「江東藏書目」, 「寶文堂書目」, 「博雅堂藏書目錄」, 「玩易樓藏書目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에서 部類에 새로운 試圖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6]

淸代에 오면 古文獻의 分流體制는 앞서의 試圖를 받아들이는 등 더욱 발전하였으니 「四庫全書總目」을 통해 四分法 發展의 絶頂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私家目錄에서는 72類로 세분되는 「絳雲樓書目」및 「述古堂書目」 78類, 章學誠 「史籍考」가 11部 55類로 세분되는 등 四分法의 쇠퇴를 의미하는 個別 獨自的 分類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章之洞의 「書目答問」에서 四部 改革의 시도를 볼 수 있으며, 그 외 「古越藏書樓書目」은 學政二部 아래 47類로 세분되고, 「南洋中學藏書目」은 淸末 西洋 學術의 수입으로 中國 書籍 분류의 改革 試圖로 14大類와 57 小類로 세분되는 등 獨自的 分類 體制가 나타났다.

그 후 新學問의 書籍들이 생산된 후로 「西學書目表」, 「東西學書錄」, 「古越藏書樓書目」등에서 이들의 배경을 담아 각 종 새로운 類目이 設定되는 分類 體制를 도입하였다. 이들 중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발표된 「西學書目表」를 예로 들면 3대분류하고 그 아래 28類目으로 세분하였으니 아래와 같다.[7]

---

6) 昌彼得, 潘美月, 「中國目錄學」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6), 178-204.
7) 呂紹虞, 前揭書, 233-236.

www.kci.go.kr

(一) 西學 : 1. 算學, 2. 重學, 3. 電學, 4. 化學, 5. 聲學, 6. 光學, 7. 氣學, 8. 天學, 9. 地學, 10. 全体學, 11. 動植物學, 12. 醫學, 13. 圖學.
(二) 西政 : 1. 史志, 2. 官志, 3. 學制, 4. 法律, 5. 農政, 6. 礦政, 7. 工政, 8. 商政, 9. 兵政, 10. 般政.
(三) 雜類 : 1. 游記, 2. 報章, 3. 格致總, 4. 西人議論之書, 5. 無司歸類之書.

근대 이후 출판이 발달되면서 1895년 商務印書館이 설립된 뒤로 廣知書局, 開明書店 等이 생겨 新刊書의 大量 출판이 容易해지면서 藏書數의 수량에도 큰 영향을 미쳐 藏書目錄 編纂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五四運動으로 중국의 文化 思想이 크게 進展되고 새로운 思想書의 대량 생산과 西洋의 목록학이 導入되어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후 淸末 西洋 十進法이 수입되었으며 東方雜誌에 紹介된 것이 최초이다. 중국에 있어 新·古書의 統合分類를 위한 새로운 十進法의 연구는 沈祖榮과 胡鹿生에 의해 시작되면서 杜定友, 「世界圖書分類法」, 劉國鈞의 「中國圖書分類法」, 施廷鏞의 「淸華大學圖書館中文圖書分類法」 등 많으나 그 중 杜定友, 王雲五, 劉國鈞의 분류법이 가장 많이 보급되었다. 이들은 類目을 세분하여 오히려 四部分類法보다 상세하게 분류되어서 新·古書를 충분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일 十進分類法에 의해 古文獻 이외의 圖書까지 통일적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古文獻의 분류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세분 발달되었으니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佛經외의 일반서적에 대한 분류는 「鏤板考」에서부터 「朝鮮圖書解題」, 「朝鮮書誌」,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국립중앙도서관의 「古書部分類目錄」, 「古書目錄」,[8] 「朝鮮十進分類法」, 「韓國十進分類法」 등의 많은 목록에서 고문헌의 類目 分類와 新·舊書의 統合 分類까지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大阪府立圖書館의 四分改修法과 독자적 분류법 張澤氏의 四分改修法이 「和漢古書分類法」 등에서 고문헌의 분류법이 발달되었다. 이러한

8) 成均館大學校中央圖書館 編 「古書目錄」 (서울: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1961).

www.kci.go.kr

古文獻의 主題 分類는 中國에서 세분 발달하여 韓國, 日本으로 전달되었으나 특히 新學書가 전해오면서 分類 體制에는 四分法의 動搖가 일어나고 新·古書 통일 분류 체제의 형식으로 발달되어 가고 있었다. 이로써 新·古書의 현대적인 주제의 접근은 持續的인 試圖가 필요하며 보다 세분 보완된 新·古書의 통일주제 분류가 필요하다.

3. 政書類의 細分 類目

3.1 中 國

앞에서 보듯이 고문헌의 주제 분류는 前漢시대 「七略」에서부터 이루어지나, 政書類의 分類 項目은 이때는 설정되지 않았다. 이 政書類의 분류체제를 시대별로 보면 梁의 阮孝緖가 晋通年間에 편찬한 七錄」에서 史部에 해당되는 紀傳錄 아래 儀典部, 法制部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隋志에서 史部의 舊事類-紀朝廷政令, 儀注類-以紀吉凶行事, 刑法類-以紀律令格式로 설정되었고[9] 그 후 舊唐志[10]에서의 보듯이 乙部 史錄에서 正史, 編年, 僞史, 雜史, 起居注, 故事, 職官, 雜傳, 儀注, 刑法, 目錄, 譜牒, 地理 13類 등으로 세분된 가운데 그 중 儀注와 刑法으로 나타나고 있다. 宋의 「崇文總目」에서도 「新唐書」 藝文志뿐 아니라 宋代의 史家藏書인 「郡齋讀書志」, 「遂初堂書目」에 까지 그대로 四分法 上에서 儀注와 刑法으로 전해지고 있다. 「直齋書錄解題」에서만 刑法을 法令으로 개칭하여 儀注와 法令으로 되고, 宋史」 藝文志에서 다시 儀注와 刑法으로 개칭되고 「文獻通考」 經籍考에서는 刑法으로만 설정되기도 하였다.

明代에서 살펴보면 「文淵閣書目」[11]에서는 四分法을 쓰지 않고 개별분류를

9) 長孫無忌 等撰, 「隋書經籍志」 (北京: 中華書局, 1985), 35-63.
10) 劉煦 等, 「舊唐書經籍志」 (北京: 中華書局, 1985), 26-57.
11) 楊士奇 等編, 「文淵閣書目」 (台北: 台湾商務印書館, 1967), 59-79.

www.kci.go.kr

채택하여 政書, 刑書, 兵法으로 하고 百川書志」에서는 四部를 채용하여 93類로 세분되는데, 이때 史志 21類 중 正史, 編年, 起居注, 雜史, 史鈔, 故事, 御記, 史評, 傳記, 職官, 地理, 法令, 時令, 目錄, 姓譜, 史詠, 譜牒, 文史, 野史, 外史, 小史로 구분하였으며 政書라는 독립 항목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으나 故事와 御記, 法令, 外史 등의 類目이 政書類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 明代 「國史經籍志」에서는 制書類 經類(11類), 史類 (15類), 子類(16類), 集類(6類)로 세분 되는데 政書에 해당하는 주제는 史類 열 번째 위치한 儀注의 21주제와 法令 및 食貨가 해당된다. 그 예로 儀注는 禮儀, 吉禮, 凶禮, 賓禮, 軍禮, 嘉禮, 封禪, 汾陰, 諸祀儀, 陵墓制, 陵廟制, 東宮儀, 后儀, 王國州縣儀, 會朝儀, 耕籍儀, 車服, 謚法, 國璽, 家禮祭儀, 射儀, 書錄 등으로 세분되었다. 法令에서는 律, 令, 格, 式, 勅, 總類, 古制, 專條, 貢擧, 斷獄, 法守 등의 11類目으로 세분되었다. 또한 食貨에서 食寶가 政書에 속하는 부류이다. 이외에 「淡生堂藏書目錄」에서는 典故類와 政實類에서 政書類에 해당되는 類目을 발견할 수 있고 「千頃堂書目」에서는 史部 18類 중 食貨, 儀注, 政刑이 해당된다.[12]

淸代에서 보면 「明史」 藝文志에서는 儀注와 刑法으로 類目이 나뉘다가 이러한 체제가 발달된 후, 「四庫全書總目」에서 지금까지의 類別 체제를 참고하여 史部 政書類가 단일 명목으로 類目이 설정되고 그 아래 通制, 典禮, 防計, 軍政, 法令, 考工之屬으로 세분되니 政書類의 세부내용이 크게 발전한 것이다.

그 외 淸代 私家의 書目으로 張之洞의 「書目答問」과 「古越藏書樓目錄」의 政部에서 볼 수 있으며 이후 梁啓超의 「東書學書錄」, 「西學書目表」는 三大別 28小항목류로서 新學書의 내용이 舊典籍과 같지 않아 四部法은 쓰지 않고 독자적 분류 28類로 나누었다. 즉 크게 西學類, 西政類, 雜類 등 세 주제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중 西政類의 관련된 부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史志, 2. 官志, 3. 學制, 4. 法律, 5. 農政, 6. 礦政, 7. 工政, 8. 商政, 9. 兵政, 10. 船政으로 세분되었다. 이외 「東書學書錄」에서도 四分法은 쓰지 않고 31類로만 나누었으니 이중 政書에 해당되는 類目은 그 政治法律, 兵制, 農政, 礦務, 船政이 해당되는 것을

12) 昌彼得, 前揭書, 180-199.

www.kci.go.kr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古越藏書樓書目」은 學部와 政部 兩部로 나누고 48類 332目으로 세분되는데 그중 政書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政部에서 掌故, 軍政, 法律이 해당된다.

3.2 韓 國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분류법이 중국의 것을 바탕으로 삼아 그 내용이 비슷하다. 四部로 改修된 목록으로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正祖 5(1781)년 徐浩修의 「奎章總目」인데 이 중 우리나라 서적을 수록한 「西序書目」의 분류체제 중 政書類는 史部아래 掌故類와 관련해 가장 가까운 설정이었다. 그 후 徐有榘가 편찬한 「鏤板考」에서 政書類에 해당되는 내용만 들어보면 掌故類(地理之屬, 職官之屬, 政書之屬)가 해당된다.[13] 중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으나 淸代 「四庫總目」이후 類屬을 세분 주제를 우리나라 實情에 맞도록 設定하였다. 근대에 들어와 奎章閣 藏書의 韓國本을 정리한 「朝鮮圖書解題」[14]에 적용된 類目 중에 政書類에 해당되는 類目은 史部 政法類로서 실제 목록에는 또한 外交관계서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朝鮮書誌」에서의 儀範部와 交通部도 들 수 있다.

이후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15]에서의 세분 내용을 보면 政書類는 史部아래 政法類라 하고 그 아래 通制, 典禮, 度支, 田制, 賦稅, 財政, 軍事, 刑獄, 詞訟, 外交, 通商, 交通, 通信, 敎育, 選擧, 公營, 官署文案으로 세분되었다. 이외 고서용 「古書目錄」[16]에서 政書類에 해당되는 類目를 보면 政治·軍事로 구분되고 政法(法典, 律例), 詔令, 奏議, 貢學(銓錄), 儀注(典禮), 行政, 地方行政, 外交交聘, 國防軍事까지 세분하여 발전했다.

---

13) 徐有榘, 「鏤板考」 (서울: 寶蓮閣, 1968), 28-32.
14) 「朝鮮圖書解題」 (京城: 朝鮮通信社, 1932), 116-204.
15) 서울大學校 附屬 圖書館 編, 「奎章閣圖書館韓國本總目錄 (서울: 東亞文化硏究所, 1967), 201.
16) 成均館大學校中央圖書館, 前揭書, 161-171.

www.kci.go.kr

4. 政書類의 類目 分析

앞에서 보듯이 政書類는 目錄學 上의 四分法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四分改修法 및 독자적 전개 분류 등에서 주제·내용의 가감 및 개칭 등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四分法이 발달된 「四庫全書總目」에서부터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政書類의 분류는 國政 朝章과 六官의 직분을 다루는 것으로 초기 「七錄」의 儀注와 刑法에서 유래되어 四分法 上 「四庫全書總目」에 6類로 세분되었다. 즉 通制, 典禮, 邦計, 軍政, 法令, 考工의 類등 으로 세분되었으나 그 후 많은 목록법에서 시대에 따라 또는 관점에 따라 類目이 추가되어 選擧나 外交를 포함하게 되었으니 각각 이들에 대한 주제도 함께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1 通 制

通制의 屬은 歷代制度와 文物制度[17]를 다룬 항목이니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제도에 관한 서적이라면 全代나 또는 一代의 여러 제도를 총괄하거나 六職의 制章을 함께 수록한 것들이다. 즉 국가 행정부 및 행정 조직의 여섯 府署가 받게 되는 직무내용 및 규율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현대의 분류 체제에서는 고대 관제 및 역대 제도가 설정되어 있으니 이에 해당된다. 역대 제도에 관한 서적이라면 예를 들어 중국의 唐 杜佑 撰의 「通典」, 宋 三溥 撰 「五代會要」, 宋의 王應麟 撰 「漢制考」, 明의 「東漢會要」, 「唐會要」, 「七國考」, 「明會典」, 淸의 「欽定大淸會典」, 「欽定皇朝通典」등과 우리나라의 經濟六典」,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등 각종 制度書들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古代官制의 歷代制度에 해당된다. 이때 歷代 官制만을 다루거나 한 曹나 한 司의

17) 紀昀 等奉勅撰, 四庫全書總目提要 卷十六 四部 政書類 通制之屬 後序 (台北: 臺灣商務印書館, 1965), 60.

www.kci.go.kr

故事와 制章을 담은 것, 즉「東國職官考」,「宮內付官制」,「侍講院志」,「宗親府條例」등은 政書類 通制之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職官類에 해당되니 현대적으로 행정부와 관련 있는 것이다.

둘째, 文物制度의 일반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의「東國文獻備考」, 四千年文獻備考」,「增補文獻備考」및 중국의 通典」, 通志」, 續通志」, 文獻通考」, 九通」,「十通」,「淸通典」,「淸通志」,「淸文獻通考」등으로 이는 文物制度를 百科全書격으로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歷史 硏究 특히 文化史的 硏究와 밀접하다. 그러므로 현대적인 분류에서 史料로서 文物制度에 해당되고, 특히 현대 십진분류의 사용에서는 동양부분의 전개가 어려워서 類書 및 一般百科事典에 적용시켜도 될 것이다.

4.2 典 禮

典禮의 屬은 春官이 主官하는 帝制와 朝章관계의 내용으로 六官의 春官所掌帝制朝章 등 尊王의 뜻으로 시작된 한 나라의 典禮에 해당된다.[18] 이는 經學의 禮類와는 다른 한 국가의 儀典에 관한 내용이므로 史料의 일부인 典故類 가운데 典儀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중국의「大唐開元禮」,「謚法」,「政和五禮新儀」,「大全集禮」,「歷代建元考」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國朝五禮儀」,「國朝喪禮補編」,「嘉禮都監儀軌」,「后妃儲宮冊禮都監儀軌」,「宗廟儀軌」,「功臣都鑑儀軌」,「進宴廳儀軌」등이 있으며 이들은 현대적 의미로는 史料의 一部로서 典故類로 봐야 할 것이다.

典禮의 屬의 유래를 보면 처음「七錄」에서의 紀傳錄 아래 儀典部에서부터 비롯되었으니 儀典部는 그 후 儀注로 四分法에서 史志書目과 家藏書目에서 그대로 답습해왔다. 특히 淸代에 와서 國政, 朝章, 六官의 諸般事가 대폭 증가하여 四庫全書總目」에서 비로소 典禮라고 命名하게 되었다. 그 후 淸代에 와서 改修되었던 四分法 가운데 대표적인 黃虞稷 撰의「千頃堂書目」에서는 史部 아래

18) 紀昀 等奉勅撰, 前揭書, 四部 政書類 典禮之屬 後序, 77.

www.kci.go.kr

儀注로, 張之洞 撰의 書目答問」에서는 史部 政書類 아래 歷代通制, 古制, 今制로만 구분되어 독립 類目이 보이지 않으나 章學誠의 「史籍考」에서는 史學部에서 義例로 독립되었으며, 「古越藏書樓書目」에서는 政部 아래 典禮로 설정되었다. 사부법을 따르지 않고 개별 분류법을 채택한 「南洋中學藏書目」에서는 政典 아래 禮樂으로 설정되었으니 典禮는 계속 儀注나 儀例 및 禮樂 등으로 命名되어 諡法, 官儀, 廟制, 位號 등 국가의 儀典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3 邦 計

邦計의 屬은 度支가 所掌하는 錢穀[19]등의 財政關係書로서 현대적 의미로는 財政史에 해당된다. 邦計와 관련된 항목을 旣存 목록에서 살펴보면 「通志藝文略」에서 食貨 아래 貨寶라 하고 「國史經籍志」에서 史類 아래 食貨의 貨寶로, 「淡生堂藏書目錄」에서 政實類 아래 食貨로, 「千頃堂書目」에서는 史部 아래 儀注와 政刑과 대등하게 食貨로 설정되다가 마침내 「四庫全書總目」에서 政書類 아래 邦計로 독립 類目으로 설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朝鮮書誌」에서 交通部 아래 貿易類가, 「鮮冊名題」에서 政敎篇아래 貢賦類가 설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明의 錢通」, 淸의 「欽定康濟錄」, 「捕蝗考」, 「荒政叢書」, 「鹽政法」 「邦計彙編」, 「國賦紀略」, 鐵冶志」, 茶馬類考」, 海運新考」, 「漕運通法」, 「救荒策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金鑛略記」, 戶口總數」, 「賦役實總」, 「均易事實」, 「貢稅要略」, 「箕田攷」, 「惠政要覽」, 「國穀總錄」, 度支田賦考」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자세히 보면 錢穀, 財賦, 漕運, 鐵冶, 鹽政, 茶馬類, 開荒, 救荒活民 등이 포함되고 있어 邦計의 내용은 經濟, 財政, 開墾, 實業, 救護對策 및 國家기간사업 등이 해당됨을 알 수 있다.

---

19) 紀昀 等奉勅撰, 前揭書, 史部 政書類 邦計之屬 後序, 80.

www.kci.go.kr

4.4 軍 政

軍政의 屬은 歷代의 養兵制度에 관한 것으로 用兵의 制度가 아닌 歷代 養兵의 制度만을 대상으로 한다.[20] 軍政관계는 주제는 일치하지 않지만 처음 「七略」의 兵書略이 보여 이와 관계가 있나 생각되지만 실제 「漢書」 藝文志에서 목록된 내용을 보면 兵術 등 用兵에 가까운 문헌들로써 일부 養兵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몇 종 안되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用兵과 養兵의 문헌이 함께 분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歷代兵制」, 「補漢兵志」, 「馬政紀」, 「歷代武擧考」, 「八旗通志初集 」 등 軍侶戰陳之事로 子部 兵家 중에 많지만, 이곳에 해당되는 것은 用兵이 아닌 養兵의 制度적인 자료들이 해당된다. 세부 주제를 기타 목록에서 보면 「四庫全書總目」 이후 四分改修法에서의 焦竑 撰의 「國史經籍志」에서 史類의 儀注 아래 軍禮 등이 있으나 이는 儀典에 관한 것이며, 子類 兵家에 軍律 등으로 개칭됨을 볼 수 있다. 그 외 「千頃堂書目」에서 史部에 典故등으로 세분되고, 天津圖書館의 분류에서 政書類 가운데 軍政으로, 「江蘇省立國學圖書館 圖書總錄」에서 史部 政書類에서 軍政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日本의 大阪府立圖書館의 「漢籍目錄」 四部之部에서 보면 史部 政書法 상에 軍政之屬으로, 張澤氏의 「和漢古書分類法」을 보면 史部 政書類 軍政之屬으로 설정되는 등 軍政之屬은 國政의 朝章 六官의 諸般事가 대폭 증가되는 淸 이후부터 많은 목록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古書用十進法에서 본다면 앞서 언급한 「古書目錄」에서 政法, 軍事 아래에 國防, 國事로 세분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軍政의 屬은 養兵制度로서 현대적 의미로 軍事 行政의 내용이 해당되며 歷史 硏究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時代史 아래서 軍事制度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兵家類의 문헌들은 軍事 行政과는 다른 戰術및 兵法등으로 古代 兵法 즉 古代 哲學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軍政一般 資料는 시대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0) 紀昀 等奉勅撰, 前揭書, 史部 政書類 軍政之屬 後序, 83.

www.kci.go.kr

4.5 法 令

法令의 屬은 法家와는 달리 歷代官署의 律令과 法令, 刑獄에 관한 문헌들을 말한다.[21] 이 類屬의 구분은 고문헌 목록의 시작인 「七略」이나 「七志」에서는 없었으나 七錄」에서 비로서 術伎錄의 刑法部로 설정되었다. 이 후 類目의 變遷을 보면 四分法이 확립 된 隋志에서 史部의 刑法類로 설정되더니 뒤에 나타나는 舊唐志에 이어, 「崇文總目」, 新唐志, 「遂初堂書目」에서도 刑法類로 명목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直齋書錄解題」에서 法令으로 개칭되더니 四分法이 아닌 개별 분류체제를 채택한 鄭樵의 「通志藝文略」에서 刑法 아래 分律, 令, 格, 式, 勅, 總類, 古制, 專條, 貢擧, 斷獄, 法守 등 11目으로 세분되어 내용이 대거 확충되었다. 그 외 元代의 「文獻通考」 經籍考에서 刑法으로, 明代에 있어서는 「文淵閣書目」에서 刑書로, 「百川書志」에서는 史志의 法令으로 되었다. 또한 「國史經籍志」에서는 앞서 鄭樵의 「通志」을 따라 史類의 法令으로 하고 그 아래 律, 令, 格, 式, 勅, 總類, 古制, 專條, 貢擧, 斷獄, 法守 11目 으로 세분되었다. 그외 淸代 四分法의 발전으로 보는 「四庫全書總目」에서 史部 政書類 아래 法令으로 되었다. 그러나 四分法을 채택하지 않고 독자적인 분류를 한 私家書目 「孝慈堂書目」에서는 85類 중에 法令으로, 「絳雲樓書目」에서는 72類 중에 刑法으로, 史籍考」에서는 故事部 아래 刑書로 개칭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天津圖書館藏書目錄」에서 法令으로, 江蘇省立國學圖書館 圖書總錄」에서는 政類 아래 律例로, 일본의 「大阪府立圖書館目錄」에서는 法令 등으로 설정되었다. 한국에서는 「奎章閣韓國本總目錄」에서 政法類, 성균관대학교중앙도서관 「古書目錄」에서는 政法, 軍事 아래 律例와 刑政으로 세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세분 내용들을 보면 刑法, 法令, 律書, 律令, 律例, 刑政 등 모두 律令이나 刑法의 내용들이다. 예를 들면 「大明律」, 「六部律全」, 「明律」, 「唐律疏義」, 「大淸律例」, 「金玉新書」, 「官民準用」 등의 律令을 비롯하여 「詞訟類聚」, 「檢案」, 「欽欽新書」, 「審理錄」, 「決訟類聚補」 등과 같은 詞訟, 刑獄 등을 들 수 있다.

21) 紀昀 等奉勅撰, 前揭書, 史部 政書類 法令之屬 後序, 85.

www.kci.go.kr

즉 古代 법령이나 刑의 집행 및 소송관계 자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여기서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法家이다. 法家와 法令은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것으로 法家는 법의 이치를 사사로이 논의한 것[22]으로 法哲學 및 法思想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한 法典은 법제도에 관한 자료로서 즉「經目大典」,「續大典」,「大典通編」,「大典會通」은 앞서의 通制의 자료로서 역대제도에 해당된다.

4.6 考 工

考工의 屬은 古代 中國의「考工記」에서 유래되었으며 類目의 變遷을 보면 淸의「述古堂書目」에서 卷四에 營造, 淸 章學誠의「史籍考」에 故事部에서 工書등에 설정되었다.[23] 또한 淸末「古越藏書樓書目」에서 工業으로,「南洋中學藏書目」에서 政典 아래 鹽法, 農政水利 등으로 설정되었으며,「天津圖書館藏書目錄」에서는 政書類의 考工으로, 日本의「大阪府立圖書館目錄」에서는 考工 등으로 항목이 설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유목들을 보면 公書, 工業, 考工 및 鹽法, 農政水利, 營造 등 모두 기술관계이다. 예를 들면 城役儀軌」, 營造法式」, 元內府宮殿制作」,「城郭築造」,「造甎圖說」, 造般紀」,「造橋榮紀」 등 각기 造船 都城, 宮殿, 灌溉의 구축으로 工作과 工營 등 관청의 공사에 관한 저술 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현대에서는 기술공학, 기술과학에 속하는 技術史로 보아야 할 것이다.

4.7 外 交

이는 과거 中國과의 관계 자료 및 이웃 日本과 琉球 등과의 교류 관계 자료로서 국가 간의 조약집이나 각국 외교 자료들을 말한다. 또는 이들에 관한 類別 항목이 目錄 上에 나타나는 것은 淸末 중국이 개방되어 西洋과의 交流가 많아지

22) 上揭書.
23) 紀昀 等奉勅撰, 前揭書, 史部 政書類 考工之屬 後序, 87.

www.kci.go.kr

면서 본격적인 자료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으니 그 유래를 보면 古越藏書樓書目」[24]의 政部의 外史, 外文 등에서 해당 유목을 볼 수 있다. 또한 淡生堂藏書目錄」에서도 約史類로 설정되었고 또한 「江蘇省立國學圖書館 圖書總錄」에서는 史部 政書類의 邦交 아래 總錄 中俄 中日 各國 租界及領事 裁判權 商約 國聯 등으로 세분 확충되었다. 그 외 일본의 大阪府立圖書館의 「漢籍目錄 四部之部」에서 政書類의 交涉으로, 張澤規矩也의 「和漢古書分類法」에서 政書類 外交로, 우리나라 「朝鮮書誌」에서 交通部의 條約類로, 成大의 「古書目錄」에서 政法軍史 아래 外交交聘으로 설정되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古代 交聘자료가 많지 않았으나 점점 세계 각국과 교류하면서 이들 관계 자료가 사회의 변화로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同文彙考」, 「增正交隣志」, 事大考例」, 日東記游」, 修信使日記」, 「各國約章合編」, 「事大文軌」, 「使朝鮮錄」, 「星軺指掌」, 「約章合編」, 「照覆」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자료는 각국의 외교와 조약집들로 국제조약에 해당된다. 外交 항목이 독립 설정되기 전에는 史料로서 史部아래 해당되었으나 현대적 의미로는 역사 아래 국가의 지리 구분 아래서 시대사로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외교 관계 자료는 외교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宣和奉使高麗國經」은 고려시대 외교, 日東記游」, 「修信使日記」, 「使和記略」은 高宗, 純宗 時代의 외교에 해당된다.

4.8. 選 擧

選擧의 屬은 科擧관계 자료로서 宋 鄭樵의 「通志藝文略」에서 이미 史類 안에 刑法 아래 貢擧로 해당 類目의 출현을 볼 수 있다.[25] 그 외에도 明 焦竑의 國史經籍志」에서 史類의 法令 아래 貢擧, 明代 「寶文堂書目에서는 中卷에 擧業으로, 淸代 「述古堂書目」에 卷三에 科第로 설정되었다. 「江蘇省立國學圖書館 圖書總錄」에서는 史部 政書類 儀制 아래 通禮, 祭祀, 萬壽, 大婚, 臨諱, 紀元, 科擧,

24) 徐樹蘭, 「古越藏書樓書目」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04), 10-15.
25) 鄭樵, 「通志」 (上海: 世界書局, 1936), 25.

www.kci.go.kr

宮闈, 雜儀 중에 科擧로 설정되어 있으며, 日本「大阪府立圖書館 漢籍目錄」에서 政書類의 아래 科擧學校로 설정되어 있고,「鮮冊名題」에는 政敎編에 選擧類로 설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내용은 科擧制度 자료이니 科詩文, 策文 및 榜目 등으로서 현대의 공무원 시험과 관계되는 자료들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文武科殿試榜目」, 「戊辰蓮榜」,「國朝文科榜目」,「嶠南科榜錄」,「司馬榜目」,「國朝榜目」등이 있다. 이는 科擧시험에 합격한 자의 名簿로서 합격자 명단과 같은 성격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현대와는 다르다.

이외에「瓊林聞喜錄」,「箕儷粹莫」,「洋庠」 등이 있으니 이들은 科詩文 등 科擧를 치른 文章 즉 시험 친 글들을 모아 편찬 한 것이다. 이는 글의 文体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학 과 관련지어야 할 것이다.

또한「新刊類編歷擧三場文選對策」과 같은 政策을 논한 것 등은 그 정책의 해당 주제로 策文中에 特定主題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史料로서의 比重이 크다면 그 해당 주제의 歷史와 관련시켜야 할 것이다.

5. 結 言

이상으로 본 논문은 古文獻 자료에 대한 주제별 文獻奉仕 및 組織을 원활하게 運用하기 위해 古文獻 자료 중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政書類의 細分 類目들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우선 古文獻 전체의 주제 분석을 위하여 歷代의 古文獻 目錄에서의 類目의 발달을 살피고 특히 史部 政書類에 대하여서는 類目 명칭의 變遷 과정을 四庫全書總目을 비롯하여 歷代 많은 書目에서 그 발달을 唐・宋代, 元・明代, 淸代 및 近現代까지 살폈다. 또한 政書類의 내용도 각 目錄 그 發達을 살피고 細分 내용의 由來를 밝혀 關聯性 있는 주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史部 政書類는 目錄 上「七錄」에서야 비로써 記傳錄의 類로 나타났으며, 그

www.kci.go.kr

후 많은 書目에서 전개 되어 마침내 通制, 典禮, 邦計, 軍政, 法令, 考工, 外交, 選擧 등이 포함되었다.

通制는 歷代 制度와 文物 制度를 다룬 것으로 國家 行政 府署의 職務 내용과 職制가 해당되며, 典禮는 儀注, 儀例등의 유목으로 전해지며, 그 내용은 謚法, 官儀, 廟制, 位號 등 국가의 儀典에 관한 것이다. 또한 邦計의 역대 목록에서 食貨, 食寶 및 貨寶 등으로 나타나며, 내용은 開墾, 實業, 救護對策 등 國家사업 등이 해당된다. 軍政은 軍律등 군사제도로 군사 행정자료가 해당되며 法令의 屬은 歷代官署의 律令과 法令, 刑獄에 관한 문헌들로서 古代 法令이나 刑의 執行 및 訴訟 관계 자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考工은 類目들을 보면 公書, 工業, 考工 및 鹽法, 農政水利, 營造 등으로 명칭의 변화를 보이며 각기 造船, 都城, 宮殿, 灌溉의 구축으로 工作과 工營 등 官廳의 공사에 관한 저술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현대에서는 기술공학, 기술과학과 관계된다. 軍政은 養兵制度의 자료이니 軍事 行政이나 軍事제도의 時代史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軍政一般 資料는 시대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 外交는 外史 外文 등으로 類目이 設定되기도 하였으며 각국의 外交와 條約集들로 국제조약에 해당된다. 選擧는 科詩文, 策文 및 榜目 등의 과거제도로서 공무원 시험 및 공무원 임용제도와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科試文등 科擧를 치른 文章集과 같이 文體를 보기 위한 書籍도 포함되니 이는 文學과도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政書類의 細分 내용을 分析하므로서 古文獻의 분류 및 文獻奉仕를 통하여 東洋學 및 韓國學 관련 분야의 활발한 이용에 도움이 되고져 한다.

<참고문헌>

姜順愛. 고문헌의 조직과 정보운용」.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歐陽修. 新唐書」影印本. 서울: 景仁文化史, 1977.

www.kci.go.kr

紀昀 等奉勅撰. 四庫全書總目提要」. 影印本. 台北: 臺灣商務印書館, 1965.
楊士奇 編. 文淵閣書目」. 台北: 台湾商務印書館, 1967.
呂紹虞. 中國目錄學史稿」. 台北: 丹靑圖書有限公司, 1986.
阮孝緖. 七錄」序 道宣 廣弘明集 卷3, 影印本. 東京: 犬正一切經刊行會, 1927.
王堯臣 共編.「崇文總目」. 台北: 台湾商務印書館, 1967.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台北: 台湾商務印書館, 1987.
劉煦 等.「舊唐書經籍志」. 北京: 中華書局, 1985.
長孫無忌 等撰. 隋書經籍志」. 北京: 中華書局, 1985.
章之洞. 書目答問補正」. 影印. 台北: 新典書局, 1981.
張澤規矩也. 圖解古書目錄法」. 臺北: 華岡出版有限公司, 1977.
昌彼得, 潘美月. 中國目錄學」.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6.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0.
玄英娥. 고문헌의 조직」. 서울: 명지대학교, 2005.
黃虞稷. 千頃堂書目」. 影印本. 台北: 廣文書局, 1967.

www.kci.go.kr

www.kci.go.kr